

대통령령 제 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해 수입이나 생산 또는 이용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영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이나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심사의 면제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곤충이용 연구시설

6. 어류이용 연구시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조의2제3항”을 “제4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한다.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32조의4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생략) <u><신 설></u>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해 수입이나 생산 또는 이용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영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이나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심사의 면제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5. (생략) ② ~ ⑥ (생략)	5. 곤충이용 연구시설 6. 어류이용 연구시설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4조의5제2항</u> ----- ----- ----- -----.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를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
③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	

4년 1월 1일

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신청 절차: 2

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신청 절차: 2

014년 1월 1일

3. (생략)

4. 제26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201

-- 제2항제1호--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

<삭제>

<삭제>

3. (현행과 같음)

<삭제>